

문서번호	생활보장과-2144
결재일자	2015.1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가정생활복지담당	생활보장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	
송정아	조민숙	심진숙	01/22 도일환		
협 조	통합조사관리1담당 代최중남 통합조사관리2담당 이주안 자활주거담당 이상월				

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 조사계획

2015. 1.

교육문화복지국
생활보장과

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계획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

I 조사개요

■ 근거규정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(확인조사) 동법시행규칙 제37조(연간조사계획 수립)

■ 기초수급자 현황 : 14년 12월말 현재

(단위:가구/명)

총수급자		일반수급자		시설수급자	
가구	인원	가구	인원	가구	인원
7,071	10,348	6,627	9,904	444	444

■ 수급자 선정기준

-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세대

【소득인정액 기준】 -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2015년 최저생계비	617,281원	1,051,048원	1,359,688원	1,668,329원	1,976,970원	2,285,610원

※ 소득인정액 :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- 1) 소득평가액 :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2) 재산의 소득환산액 : (재산 - 기본재산액(5,400만원)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
【부양의무자 기준】

-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
-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
-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,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

■ 추진방향

-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
- 수급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조사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한 정기적인 확인 조사

II 세부 추진계획

■ 조사기간 : 2015. 1 ~ 12월

■ 조사대상 및 시기

- 조사대상 : 수급자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
- 모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
 - ▶ 단,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실시, 특히 중점관리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하여는 생활실태 등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
- 조사시기
 - ▶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사
 -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, 이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
 - ▶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조사
 - 공적자료 소득·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로서 다음의 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
 -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, 추정소득, 사적이전소득부과자 : 연1회
 - 조건부과제외자, 조건제시유예자,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: 반기별 1회
 -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및 임시일용소득자 : 반기별 1회
 - 조건부과제외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 : 그 기간 경과시 소득 조사 실시
 - ▶ 부양의무자 조사
 -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에 의해 변동사항을 조사하되, 다음의 경우는 예외
 - 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소득에서 차감한 교육비의료비 등 : 연1회
 -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선보호하고 있는 경우 : 연1회
 -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하여 보장비용을 면제받은자 : 확인조사 제외

■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

업무구분	일정 및 내용	추진부서	비고
2015년 연간조사계획 수립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 심의·의결	2015. 2월말 까지	기초생활보장팀	
2015년 대상자별 세부조사계획수립	- 국민기초수급자 개별 조사하기, 내용, 일정	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	
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I	- 행복e음을 통한 조사 - 연간·반기·분기 조사 등 - 급여변동, 자격중지, 부정수급확인 등	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	
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II	- 신고의무사항에 대하여 개별안내 - 독거가구에 대하여 방문 및 유선확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부확인	동 사회복지담당	
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	- 자활지원계획수립의 적정성평가 -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	자활주거팀	
중점관리대상자 확인 조사	- 부정·부적정으로 의심되는 가구 중점관리 대상으로 등록,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 - 급여변동, 자격중지, 부정수급확인 등	통합조사관리1팀 통합조사관리2팀	
보장비용징수	-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결정	기초생활보장팀	

■ 확인조사 내용 및 조사방법

● 조사주체

- 연간조사계획에 따른 수급자 조사 : 통합조사관리팀
- 보장시설 수급자 확인조사 : 시설담당 관리부서
- 확인조사 및 차상위계층 조사 : 동주민센터 복지담당
- 보장결정, 결정통지, 보장비용징수 등 : 기초생활보장팀

● 확인조사 내용

-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
- 수급자,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
-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
 - ※ 자활지원계획수립의 적정성 평가 및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
- 기타 수급자의 건강상태 ·가구특성 및 생활실태

● 조사의 원칙 및 방법

-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적용 및 필요시 방문조사 실시
- 행복e음에 의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불충분한 경우 :
 -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
 -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
- 상담 · 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:
 - 수급자의 거주 여부 및 가구원 일부 전출시 동일 생계여부와 동일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
 - 수급자의 근로능력 · 가구 특이사항 등

● 자료제출의 요구

-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 · 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* 자료의 제출은 급여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함

III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처리

- 수급자의 자격,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 변경하고,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
-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 · 방해 · 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결정 취소 또는 급여의 정지 · 중지를 할 수 있음(법 제22조제8항, 제23조제3항)
-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일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 시, 해당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
 - 해당 시설담당 공무원은 수급(권)자에게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

IV 보장비용의 징수

■ **근 거**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, 시행령 제41조

■ 징수대상

-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
-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선보호 조치를 한 경우의 부양의무자

■ **징수방법** : 부양의무불이행자,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보장비용(기실시한 급여)을 서면 (등기우편 등)으로 납부통지하여 징수

■ **징수절차** : 부정수급 여부 확인 → 보장비용징수기준 해당 여부 판단 → 보장비용 징수 결정 → 징수

V 유의사항 및 행정사항

■ 유의사항

-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
-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로 제공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

■ 행정사항

-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이 포함된 세부계획 수립 : 통합조사관리팀
- 개인정보의 보호(법 제22조제6항)
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(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8조)
-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,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, 조사표 부실 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

■ 홍보실시

- 연간조사실시 및 급여신청 안내 등 홍보 : 동주민센터
 - 반상회보 및 동 홈페이지 게재
 - 기타 직능단체 회의 등 자료 게재
-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급여내용 등
- 기초수급자 감면제도 및 신고의무사항에 대한 개별 안내